한국보험시장 분석을 통한 시민보험 협동조합 도입 필요성에 관한 소고*

이상유**. 이선희***. 박성순****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 2조에는 '상호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 험계약자인 시민의 편익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단 하나의 상호보험회사도 국내에 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보험시장은 특정 주주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집단이 장 악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약 200조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시장 90% 이상을 30대 대기업집단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 으며, 다수의 시민은 본인의 보험금이 대기업집단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의 보장사항에 대한 정보 또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정보비대칭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이 주인인 보험회사, 보험계약 자가 주주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익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국내 보험시장의 현황, 국내 보험시장의 폐단과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보험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정책기관들 이 시민주도의 혁신적인 보험회사 수립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한국보험시장, 협동조합, 시민주도형 보험

^{*} 이 논문은 2018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조교수, 제1저자 (leesy@skhu.ac.kr)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sun2y78@hanmail.net)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asiu502@gmail.com)

A Review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itizen-led Insurance Cooperatives based on Analysis of the Korean Insurance Market

Lee, Sang-Youn*, Lee, Sun-hee**, Park, Sung-soon***

Abstract |

Section 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of Korea clearly stipulates a legal form of "mutual company", and plans to secure the benefits of citizens who are policyholders are prepared. However, there is no single mutual insurance company in Korea due to the national policy focused on the growth of large corporations for decade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problems caused by insurance companies dominated by large corporate groups based on specific shareholders. As of 2017, the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market with the market size of about 200 trillion won is occupied by 90% or more of the 30 large corporate groups. Most of policyholders are not informed about how their insurance money is used by large companies and information on insurance market. They face with a typical information asymmetry situation that cannot be properly identified. In the case of insurance companies where citizens are the owners and policyholders are shareholders, this inconsistency of interests can be overcome. Citizen-led insurance companies can be established sufficientl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and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The government's financial industry regulator should come up with more proactive suppor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ve citizen-led insurance companies.

Key Words: Korean insurance market, Cooperatives, citizen-led insurance company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The first author (leesy@skhu.ac.kr)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sun2y78@hanmail.net)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Co-authors (asju502@gmail.com)

I. 서론

역사적으로 '보험'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협동하여 기금을 모아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주주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집단에 장악된 보험사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그들은 다른 계열사들과 출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보험 회사의 이익과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민세진, 2014). 2017년 기준 약 200조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시장은 90% 이상의 30대 대기업집단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들은 본인의 보험금이 대기업집단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보험의 보장사항에 대한 정보 또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상황에 직면하고 있다(Wicks, 2002).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은 시민들의 보험금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지배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 형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계약자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보험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전체 민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청구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축소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주식회사의 소유자(주주)와 보험금을실제로 불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사용자)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있다.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들은 대기업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보험자회사를 통한 계열사 투자, 퇴직 금융위직원들의 보험회사 재취업 등 대기업 위주의 보험사업도 경제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문제점 중 하나이다.

시민이 주인인 보험회사, 보험계약자가 주주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익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주주인 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높이는 행위가 그들의 이익에 반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민의 이익을 담보한 보험회사 창업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보험시장의 현황, 국내 보험시장의 폐단과 사례, 폐단의 원인을 정리하여 시민주도의 보험회사가 설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시민주도의 혁신적인 보험회사 수립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한국 보험시장의 현황

1. 보험시장의 개요

1) 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 보험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1)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 보험업을 말한다. '생명보험업'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업'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보험업'은 제3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회사의 범위

(1)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관련 업무, 상품개발 및 계리업무, 손해사정업무, 자산운용업무, 재보험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상품과 연금보험상품(퇴직보험 포함)과 관련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계약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람의 생사 관련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취급 보험상품은 담보위험의 성격에 따라 사망보험, 연금을 포함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화재보험, 항공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과 관련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이외에도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을 시행령에서 손해보험 중목으로 정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제3 보험상품인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대해 자회사 설립 없이 본체에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도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 되어 있으나

¹⁾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1970년 정부의 보증보험 일원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지 아니하고 서울보 증보험 전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업법 제 4조	시행령 제 8조
	1. 생명보험	_
생명보험	2. 연금보험	_
	3. 기타보험	ı
	4. 화재보험	_
	5. 해상보험	-
	6. 자동차보험	-
	7. 보증보험	-
	8. 재보험	_
		1. 책임보험
손해보험	9. 기타보험	2. 기술보험
는에포함		3. 권리보험
		4. 도난보험
		5. 유리보험
		6. 동물보험
		7. 원자력보험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10. 상해보험	_
제3보험	11. 질병보험	_
게이프 님	12. 간병보험	_
	13. 기타보험	

<표1>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구분

(2) 보험회사의 겸업 업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취급하는 보험의 위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손·생보 본체 내 겸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일 회사 내에서 겸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회사 형태로는 겸영이 가능하다. 또한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제3 보험업은 겸영이 가능하며, 퇴직보험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영업이 가능하다(보험연구원, 2013).

2. 국내 보험시장

1) 국내 시장 상황 및 전망

국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00조이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후 금리상승이 예측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보험 해약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보험연구원, 2017a).

각 보험 영역별 규모 및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년 보험산업 종목별 전망

(단위: 억 원, %)

		2015	5	201	6	2017(E)	20180	F)
	종목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1	377,794	9.2	402,894	6.6	420,421	4.4	432,238	2.8
생	저축성²	649,618	2.6	620,348	-4.5	584,643	-5.8	567,244	-3.0
명	퇴직연금	136,990	15.9	167,252	22.1	176,491	5.5	185,803	5.3
보	기타3	7,735	-5.1	7,619	-1.5	7,641	0.3	7,582	-0.8
험	합계	1,172,137	6.0	1,198,11 2	2.2	1,189,197	-0.7	1,192,86 7	0.3
	장기손보	465,801	4.9	477,727	2.6	492,008	3.0	502,238	2.1
	상해·질병	243,162	14.0	271,537	11.7	298,147	9.8	314,990	5.6
	저축성	104,650	-11.0	82,488	-21.2	62,736	-23.9	47,679	-24.0
	기타4	117,988	4.2	123,703	4.8	131,125	6.0	139,569	6.4
	연금부문	103,879	-0.9	118,160	13.7	116,490	-1.4	118,623	1.8
손	개인연금	40,211	-2.1	38,768	-3.6	37,098	-4.3	35,262	-5.0
해	퇴직연금	63,668	-0.1	79,392	24.7	79,392	0.0	83,362	5.0
보	자동차	149,914	10.7	164,053	9.4	172,911	5.4	178,445	3.2
험	일반손보	82,879	1.8	85,032	2.6	89,083	4.8	93,054	4.5
	화재	3,041	-2.1	3,011	-1.0	2,965	-1.5	2,905	-2.0
	해상	7,091	-3.4	6,080	-14.3	6,201	2.0	6,326	2.0
	보증	15,816	4.4	15,909	0.6	17,182	8.0	18,117	5.4
	특종5	56,931	2.0	60,032	5.4	62,734	4.5	65,707	4.7
	합계	802,473	4.8	844,972	5.3	870,492	3.0	892,360	2.5
	전체	1,974,609	5.5	2,043,08 4	3.5	2,059,689	0.81	2,085,22 7	1.24

주1: 보장성에는 종신보험, 질병보험, 변액종신 등이 포함됨

주2: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등이 포함됨

주3: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주4: 기타에는 재물,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포함됨

주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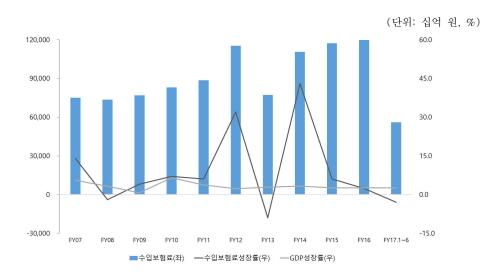
주6: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17.11) <요약 표 1>재인용

2) 생명보험

(1) 보험회사 및 보험료 규모

생명보험업은 국내 경기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2004년 이후 2014년 까지 국내 GDP 성장률이 연평균 3.5% 이상을 나타냄에 따라, 대외 변수가 발생하였던 두 번의 시기를 제외하곤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2015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생명보험산업 성장세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낮아졌으나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추세 및 노후보장 수요 증대, 실적배당형 보험 판매확대 등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표3> 생명보험 성장단계 지표

(단위 :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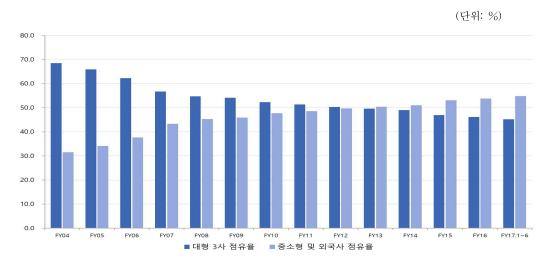
구분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FY17
보험밀도	158	170	177	231	154	219	232	234	237
보험침투도	7.0	7.0	7.0	9.0	7.1	7.4	7.5	7.3	7.1

주1 :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GDP 주2 : FY13은 2013년 4월 ~ 12월 까지의 9개월 기준 수치임

자료: 보험연구원(2017b), SwissRe, Sigma

우리나라의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FY09 이후 저축성 보험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FY12의 세제 개편 및 농협생명보험의 편입 효과에 따른 급성장 후 보험밀도가 다소 낮아졌으나, 최근 3개년간은 1인당 보험료가 23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도인 보험침투도 역시 FY12 를 제외하고는 7.0~7.5% 사이에서 안정

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망을 판매 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형 생명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하였고,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고학력 모집조직을 활용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생명보험협회(국내 25개 생명보험사 기준)

<그림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

이와같이 중소형사 및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판매채널상의 제약이 일부 약화됨에 따라, 대형 3 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고, 특히 2013년 이후 대형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2) 현황 및 전망

과거 보험 설계사를 통한 대면 판매 중심에서 방키슈랑스, 텔레마케팅, 인터넷 보험 판매 등 다양한 채널를 이용한 비대면 보험 판매가 활성화 되었고, 금융통합화 등으로 산업의 내·외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시장참여자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의 고도화와 국내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라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금상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업의 보험영역 수익성은 다소 개선되었다.

국내 보험밀도는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가의 총수입보험료가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침투도가 2012년도를 제외하곤 7.25%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국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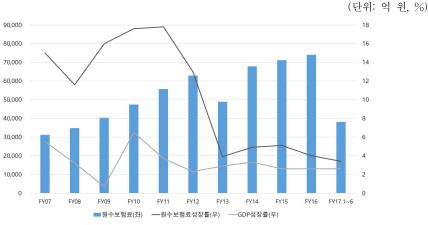
상이 크게 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과거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 도입 예정인 IFRS 17은 보험산업 전반에 있어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라는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되며(남혜정, 2021),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IFRS 17 도입 시점인 2023년까지는 자본적정성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이강욱, 2017).

3) 손해보험

(1) 보험회사 및 보험료 규모

손해보험업은 해외사업 비중이 낮은 내수산업으로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자동차등록대수 등이 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발생에 따라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다만, 노후보장에 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보장성 보험과 같은 장기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민간소비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졌으나, 일반 산업 성장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둔화된 양상을 보인다.



주 1 : 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온라인 전업사 포함

주 2 :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기준

주 3: FY13은 결산연도 변경으로 3월에서 12월 까지 9개월분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협회, 한국은행

<그림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손해보험업의 성장률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통합보험판매를 강화하면서 장기손해보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동차보험부문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장기보험의 신규 수요가 감소하여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후 장기보험부문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재차 증가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FY09부터 FY12까지는 저축성 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15.6%에 달하는 고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과거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4> 손해보험 성장단계 지표

(단위: 만 원, %)

구분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FY17
보험밀도	90	107	123	137	107	152	159	165	169
보험침투도	4.0	4.4	4.9	5.4	4.9	5.2	5.1	5.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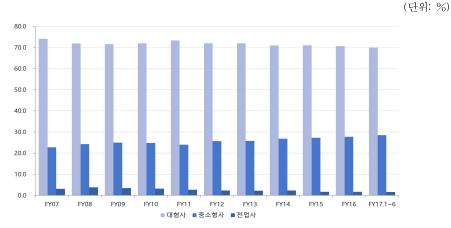
주 1: 보험밀도 = 1인당 보험료

주 2 :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명목국내총생산(GDP)

주 3: FY13은 2013년 4월에서 12월 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보험연구원

우리나라의 1인당 손해보험료는 손해보험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바탕으로 FY09에 90만원에서 FY16에는 165만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보험침투도는 5.2%로 OECD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FY11이후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가 비교적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대형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주 2 중소형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MG손보

주 3 전업사: AXA, 더케이, 카디프

자료: 손해보험협회

<그림4>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손해보험업은 외환위기 이후 재무안정성과 자본적정성이 높은 상위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지속되어,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삼성, 현대, 동부, KB)의 시장점유율이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6개사(메리츠, 한화, 홍국, 롯데, 농협, MG)의 시장점유율은 27% 내외수준이어서, 대형사의 과점적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형사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손실지속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의 경쟁지위가 저하되고 있으며, 판매채널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사의 시장지위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 현황 및 전망

손해보험업은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 및 국민건강보험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 등이 예상되나,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압력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 환경은 보험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역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손해보험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RBC(Risk Based Capital) 제도2)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강화는 보험사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보험시장 역시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 17의 영향으로 회계상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자기 자본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그 전에 이를 대비하여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자기자본 증가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동선, 2017).

Ⅲ. 한국 보험시장의 폐단과 사례

1. 자산운용 위탁 계열사 '몰아주기'

국내 많은 대기업이 수익률이 낮은 계열 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사업을 일감 몰이주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현대라이프생명의 확정급 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계열사 물량은 98.32%에 달하였고, 삼성생명은 계열사 물량이 59.66%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난 3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17%로 이는 생명보험업계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한 신한생명, 한화생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조선비즈, 2017).

²⁾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보험·금리·시장·신용· 운용리스크 등 보험사가 가진 각종 위험을 정밀히 측정해 갑작스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한화생명

동부화재

흥국생명

사업자명	기업집단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사람사명	/ 1립업인 	계열사	전체	비중			
현대라이프	현대차	1조1570억	1조1767억	98.32%			
삼성생명	삼성	10조2551억	17조1882억	59.66%			
롯데손해보험	롯데	7989억	1조9858억	40.23%			
삼성화재	삼성	9716억	2조5701억	37.80%			

3310억

561억

32억

<표5> 보험회사들의 퇴직연금 적립금과 계열사 물량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헙협회

11.50%

6.12%

1.02%

2조8757억

9171억

3192억

이렇게 몰아준 보험사 자산의 운용을 다시 계열 자산운용사에 맡기기도 한다. 변액보험은 규정상 보험사 자체 운용이 금지돼 있고, 100% 위탁해 운용해야 한다. 2013년 기준 삼성생명은 변액보험 자산 중 52%가량인 8조 8000억 원을 삼성자산운용에 맡긴 바 있는데 이는 3.6%인 케이디비(KDB)생명과 대조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계열사에 위탁 운용하는 비중이 96.6%나 되었다. 해당 보험사들은 "경쟁력이 있어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수익률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013년 11월 말 기준 삼성생명 변액보험 자산운용 중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계열 자산운용사의 연수익률은 5.64%, 비계열사는 5.96%로 나타났다. 국내 채권형 펀드 수익률도계열사는 5.22%, 비계열사는 5.32%였으며,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만 유일하게 계열사의 수익률이더 높았다(한겨레, 2012).

자산운용을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위기 시 부실 위험성이 높을 뿐더러, 특히 일감을 계열 자산 운용사에 몰아줄 경우 비계열 금융회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침 해되기 때문에 금융권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계열사 투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문제

한화

동부(DB그룹)

태광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자본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자금을 굴려 이익을 취하는 보험사·증 권사 등 제2금융권은 이러한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1개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사가 총 186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흔히 말하는 '재벌'이다. 보유 수를 보면 미래에셋이 33개, 한국투자금융 23개, 삼성 17개, 유진 13개, 롯데 12개 순으로 많았다. 그중 삼성, 유진, 롯데는 금융주력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산업자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16개 집단소속 67개 금융보험사가 157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1.3%이다. 이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은 액면가 기준 7조 1,6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8%인 1조 8,903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12개 집단 소속 29

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9.0%이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 변동이 미미한 반면, 미적용 대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서 출자가 대폭 증가했다(공정거래위원회, 2018). 이러한 금융회사 그룹과 비금융회사들의 빈번한 출자 거래는 비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회사에 전이되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금융회사의 부실과 파산위험을 높여 공적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남혜정, 2021).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 총자산은 약 250조 원으로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3%인 7조5000억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약 1062만 주로, 이 주식가격이 7조5000억 원을 넘어가면 보험업법 위반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1주당 가격을 240만 원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가격은 약 26조 원이다. 보험법 상 보유가 허용된 계열사 주식가액보다 18조5000억 원 더 많다. 불법이 명백해 보이지만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총자산 3%를 산정하는 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정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27%를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 밑으로 떨어진다(중기이코노미, 2018). 이렇듯 다른 업계 규제와 달리 보험업만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3%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도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현재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들이 이들의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사적으로 활용해 다른 계열사에 영향력 행사 및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다(폴리뉴스, 2018).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회사가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계열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분의 처분이 여의치 않아 부실이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이기영, 2017). 또한, 금융보험사의 경우 위험을 낮추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보험회사이다. 그러나 불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특정 회사의 지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박소정, 2014).

3.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

은행 창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보편화로 인해 불완전 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다. 다만 계약취소 시 판매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모집경위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과 달리 은행은 불완전판매 발생이 해당 직원과 지점의 실적과 인사평가등과 직결돼 있다 보니 소비자가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인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다.

보험 판매에 있어 은행이 지닌 우월적 지위도 불완전판매 관행을 견제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이다.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중 순이자이익을 제외한 비이자이익은 1조8,208억 원이고, 이중 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1,185억 원으로 6.5%에 불과하다. 반면 생명보험사 23곳의 상반기 수입보험료 가운데 은행에서 판매된 보험의 수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71.7%에 달한다. 은행은 방키슈랑스 수익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은행이 가장 큰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다(한국일보, 2018).

보험 약관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재해사망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표'상에 포함된 '우발적 사고'로 생을 달리 했을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문제는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재해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모호한 표현이다. 보험사가 이런 약관을 빌미로 망자를 일반 사망(자연사)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과 보험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는 2017년 기준 4만7742건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민원을 보면 생보사 6332건, 손보사 1만6030건으로 전체 민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검증하기 위한 보험사 의료자문 체계 또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상품약관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원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문구와 어긋날 경우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축소해 지급한다. 혹여 지급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소위 셀프의료자문을 통해 지급심사가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는 구조다(한국스포츠경제, 2018).

<표6>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

(단위: 건, %)

	2014		2014 2015		20	16	2017(상반기)	
	의뢰건	부지급건	의뢰건	부지급건	의뢰건	부지급건	의뢰건	부지급건
생보	8,983	6,240	21,650	15,001	29,658	19,981	14,638	9,902
손보	8,299	4,056	10,970	5,576	19,761	11,142	16,876	8,677
합계	17,282	10,296	32,620	20,577	49,419	31,123	31,514	18,579

주: 의뢰건과 부지급건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청구내용(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자문을 한 경우 및 기타사유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의료자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생명·손해보험사 전체 기준으로 2014년 5만4399건이던 의료자문은 2016년 8만3580건으로 53.6% 증가했다. 늘어나는 의료 자문건수만큼 자연스레 부지급 건수도 증가했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셀프의료자문으로 부지급된 건수가 전체 의료자문 건수의 70%이상으로 나타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통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장애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 시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주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셀프의료자문은 보험사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나 이와 유사한 소견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사가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거부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뉴스원, 2018).

4. 불공정 계약 문제

생명·손해보험업계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약 18만9858 명,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약 21만8292명이다. 업계에선 현재 전체 보험설계사 수가약 40만 명 정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통해 위촉관계를 맺는다. 위촉은 일정한 목적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고용이 아닌 소위 '노무공급계약의일종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와 고용관계가 아님에도 출근과 회사 직원처럼 일하기를 강요받고 있다. 또 위촉관계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제공되지 않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실적이 나빠지면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험사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계약이 잘못될 경우 모두 설계사 책임으로 돌린다. 보험사의 설계사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위촉계약서 때문이다.

설계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잔여수당 문제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고객 계약수당을 나눠서 지급한다. 그런데 해촉이 되면 보험사들은 잔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GA(보험대리점)의 경우 잔여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위촉계약서의 지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위촉계약서에 해촉 시 다음 조건에 부합한다면 잔여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단서조항을 많이 넣어 둔다는 점이다. 이것은 잔여 수당을 가급적 조금 주기 위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은 GA(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에게 '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기도 한다. 코드란 생명보험설계사 시험과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을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사번(社番)이다. 이 코드가 있어야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 A생명보험사로 들어간 사람이 생보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A생명보험의 번호가 나온다. B손해보험사에 입사한 사람이 손보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역시 B손해보험의 사번이 나온다. 설계사가 본래 소속됐던 보험사에서 GA(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하면, 본래 소속됐던 보험사는 이직한 설계사에게 코드를 주지 않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코드를 주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주간한국, 2018).

5. 자동차보험 피해사례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에 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대며 보험사 약관에 따라 과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사고 할증기준 이내 금액을 보험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 고, 블랙박스 특약요율 폐지, 기본 보험료 인상 등으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한다. 또한 차량 수리비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6년 1분 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시 진행되는 보상처리 관련이 68.6%였고, 보험가입 단계인 계약 관련은 31.2%였다. '보상'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1분기에는 전년과 같은 기간 대비 91.7% 증가하였으며,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6년 1분기에 전년과 같은 기간 대비 125.0% 증가했다.

'보상' 관련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금 과소산정' 관련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렌트카이용 제한 또는 재활기구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 '과실비율 다툼'이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유형은 특약 등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지 않는 등 '계약내용 불일치 '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과다할증'이 22.7%였다. 특히, '보험료 과다할증' 사례는 경미한 차량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했음에도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 경우로서 2014년 1건, 2015년에 10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분기에만 11건이 접수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6).

Ⅳ. 한국 보험시장 폐단의 원인

1. 대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대기업 계열 보험사가 실질적 은행 역할

'금산분리' 원칙이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기업이 부실해져도 계열 금융사로부터 계속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금융사 투자자금도 부실화된다(중기이코노미, 2018).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사 속성상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금융사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자금은 고객이 맡긴 것으로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부실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기에, 일반 사기업과 달리 강한 규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산분리보다는 은산분리가 우리나라 금융정책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밝힌 2004년 재경부 로드맵의 제목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이다. 즉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아니라 이미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및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폐해 방지에 정책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부터 대기업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1998년도 거평그룹은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그룹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해 주거나 계열사간 무 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계열에 부당 지원한 바 있고, 현대투신운용은 현대투신에 시중 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콜자금을 제공하거나 현대투신의 상품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대우그룹의 실질적인 계열사로 알려졌던 서울투신운용이 대우그룹에 대해 투자한도를 어기고 과다하게 자금은 지원한 사례도 있다(이병윤, 20066).

최근에는 2013년도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에서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게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된 바있으며(한겨례, 2013), 같은해 있었던 동양사태는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 그룹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증권을 창구로 부실 회사채 및 CP를 발행해 대규모 유동성을 조달하여 약 4만 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이다(주간현대, 2015).

이처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은 모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미 산업자본인 기업들은 보험사나 캐피탈 등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있다. 대기업의 금융사 사금고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동양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가 그룹 내 부실 계열사의 돈줄로 전략할 경우 기업 전체가 부실 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남게 된다.

2.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퇴직 후 금융기관으로의 재취업

최근 10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퇴직공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승인을 받고 퇴직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했다. 즉, 금융당국 퇴직자 10명 중 8명이 직무와 연관된 금융회사·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고위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퇴직 이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표7> 금융위, 금융감독원 출신의 재취업 기관 유형별 분류

유형	금융회사	금융관련기관	로펌	비금융	계
인원	90	25	4	24	143
비중	63%	17%	3%	17%	100%

주 금융관련기관: 연구원, 협회, 금융인프라(보안, SI 등), 회계·세무법인 등 자료: 뉴스핌 김신정기자, [국감2017]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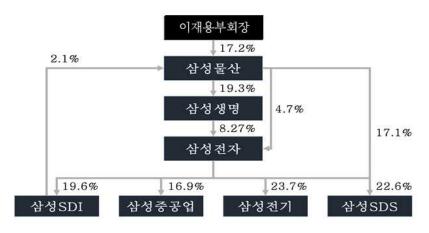
금융위·금감원 출신이 재취업한 기관 유형을 살펴봤더니 금융회사가 90명(63%)으로 집계됐다.

금융 유관기관 취업(25명)까지 합하면 115명(80%)이 금융업계로 취업했다. 이는 퇴직자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공직자들의 재취업은 퇴직 후 빠르게 이루어져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67%가 한달 이내에 재취업했다. 최근 10년간 모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1개월 이내 비율(35%)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된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자들을 로비 창구로 활용하고, 퇴직자들은 수억 원의 연봉을 보장받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17).

3.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대기업보험사 위주의 정책

재벌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들이 행정부와 국회에서 다뤄지는 양태는 명백한 뇌물 거래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경유착의 범주로 다뤄지지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취득을 보험사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제·개정 권한을 갖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규제가 무력화된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한겨레, 2018).

이 규정으로 삼성그룹이 유일하게 특혜를 누리고 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을 이용하여 삼성생명은 금산분리 규제에서 빠져나갔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총자산 3%를 산정하는 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27%를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은 3% 밑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위반 상태는 오직 삼성그룹에만 해당하고 이는 총수 일가가 자기 지분 투자 없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중기이코노미, 2018).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림5>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약 17% 지분을 가졌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이 0.06%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지배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삼성전자까지 이 부회장이 좌지우지할수 있는 또 다른 고리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27%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0.06%를 가진 이 부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삼성전자로 내려가는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은행을 포함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총자산에 대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산정기준을 시장가 격으로 규제한다. 보험업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조롱하는 이유도 보험업법만 유독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취득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V. 결론: 새로운 대안, 시민주도형 보험회사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 2조에는 엄연히 '상호회사'라는 법적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인 시민의 편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대기업성장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단 하나의 상호보험회사도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보험회사는 대기업집단의 특정한 주주를 위한 영리추구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조직이다. 보험이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십시일반 서로 도와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대자본이 소유한 특정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한 이 현실을 우리는 타계해야 한다.

시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들 은 이렇게 모인 보험료를 제대로 운용하고 소비자들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보험사가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 기업 계열 금융보험사들의 경우 투자라는 명목 하에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의 지배 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과 보험사에 유리한 위촉계약을 통해 해촉 후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 소비자 역시 방카슈랑 스로 인한 불완전 판매, 보험약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사와 의 지급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폐단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로운 형태의 시민주도의 보험회사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 운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영역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정하고 필요한 보험을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이 협동조합 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시민활동가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시작하고 있 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주민협동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생활안정망을 만들 어나가고 있다(한국공제신문, 2020).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필요한 보험을 만 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 지원이야말로 대기업 중심의 금융정책을 친서민 금융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보험회사 설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인 한국보험시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해외 사례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로는 해외의 시민주도형 보험 혐동조합에 대한 탐색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한국보험시장의 현상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시민주도형 보험 협동조합의 도입과 발전 과정 등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 역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협동조합 형태 보험조합의 예상되는 설립과정, 운영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혜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18),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남혜정(2021), 보험회사의 지배구조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125, 93-118.

민세진(2014), 대기업집단 내 보험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금융지식연구 12(3), 125-155.

박소정(2014), 한국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위험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시장과 정부 연구세터.

보험연구원(2013), 2013 보험업시장분석보고서.

보험연구원(2017a),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2017b), 정책보고서

이강욱(2017), 2018 생명보험 산업위험 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이기영(2017),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KDI정책포럼 제266호,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동선(2017), 2018 손해보험 산업위험 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이병윤(2006),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금융연구 20권 별책,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소비자원(2016), 자동차보험 피해예방주의보.

Wicks, E. K. (2002). Health insurance purchasing cooperatives. New York (NY): Commonwealth Fund.

뉴스원(2018.08.05.일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 전략", https://www.newsl.kr/articles/?3390798

뉴스핌(2017.10.16.일자), "[국감2017]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금융기관"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16000013

매일노동뉴스(2017.10.16.일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10명 중 8명 금융업계 재취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30

조선비즈(2017.10.25.일자), "대기업들, 수익률 낮은 계열 보험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2784.html

주간한국(2018.03.13.일자), "보험사 갑질에 눈물 흘리는 보험설계사들",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3/dh20180313111604138060.htm

주간현대(2015.11.02.일자), "피해자만 남은 '동양사태' 2년", http://www.hyundaenews.com/17243

- 중기이코노미(2018.04.05.일자), "보험업법='삼성생명법'='이재용법'",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1229&&cate1=12&prevPagename=mainList.html&aCode=
- 폴리뉴스(2018.08.28.일자), "은행 없이도 고객 돈으로 지배력 강화하는 대기업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5879
- 한국스포츠경제(2018.08.09.일자), "질식이 자연사?...믿었던 보험의 '배신'",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204
- 한국일보(2018.08.13.일자), 적금인 양 보험 팔고 나몰라라.. 방카슈랑스 여전한 '고질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101782748075
- 한국공제신문(2020, 04, 06), "한국 협동조합 현황과 공제사업의 전망3",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486
- 한겨레(2012.12.26.일자), " "금융위 "규제" 발언에도…삼성, 또 금융계열사 몰아주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7160.html
- 한겨레(2013.10.04.일자), "효성그룹 총수 일가, 계열 금융사서 수시로 '차명 대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5770.html
- 한겨레(2018.03.08.일자), "[장흥배, 을의 경제학] 정경유착, 부패 처벌 넘어 구조를 해체해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5251.html

논문접수일: 2021년 1월 28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6일